경기도 공고 제 2022-5509 호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(등록말소) 집행정지 공고

경기도 공고 제 2021-5349 호(2022. 4. 4.)에 따른 행정처분(등록말소)에 대해 그 효력의 집행을 정지하고, 그 사실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 85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 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5월 4일

경기도지사

상 호 (대표자)	소재지	건설업 종 (등록번호)	집행정지 내용	
			기 한	사 유
호명 종합건설㈜ (조병엽)	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1166-3, 상가동 205 호 (대교산과내아파트)	건축공사업 (10-5630)	피신청인이 2022.4.4. 신청인에게 한 2022.5.1.자 건설업 등록말소처 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 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	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인용결정 (집행정지 2022-704) (2022,4.29.)